

2026년 경상남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디지털 R&BD 지원(테스트베드경남실증) 재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상남도, 창원시가 추진 중인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사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및 관련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기획부터 사업화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新 사업, 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 공고 개요

- 공고목적: 디지털 제조혁신 및 관련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기획부터 사업화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고기간: 2026. 3. 4.(수) ~ 2026. 3. 18.(수) 16:00까지
- 지원규모: 총 2개 과제
- 모집분야

번호	세부사업	내용	지원대상	사업 규모	모집 규모
1	테스트베드 경남 실증	디지털 혁신 제품, 서비스를 도정 현장에 시범 활용하고 실증을 통해 기업 판로개척 및 사업화 지원	산학연 컨소시움 ※주관기업은 경남소재	과제당 120백만원 내외	2

※주관수행기업은 2026년 디지털 혁신 챌린지(2단계), 테스트베드 경남 실증, 사업화 성과확산 중복 신청 불가
(단, 공동수행기관은 중복 신청 가능)

※ 사업비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역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사업” 사업 지침/편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민간의무매칭은 지원금액의 20%(현물 현금(지원 금액 및 신청기업의 규모에 따라 민간의무 매칭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 또는 서비스를 도내 지자체(출자출연기관 포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실증으로 공공성 및 제품-서비스 완성도 제고

※정부 공공기관의 범위: <https://www.alio.go.kr/organ/organDisclosureList.do> 참조

※지방 공기업 / 지방출자출연기관 범위: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pubCompGuide.do> 참조

○ 지원대상: 산학연 컨소시움 필수

- (주관)경상남도 소재 디지털 기업, (공동) 대학, 연구소 등

컨소시움 구성예) 산+연 (o), 산+연+학(o), 산+학(o), 학+연(x), 연+학(x)

○ 지원분야: 경상남도 도정 및 시정 혁신,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SW융합 서비스 및 솔루션

- 교육, 안전, 재난, 환경, 의료, 시설관리, 화재, 교통 등 공공분야

- 테스트베드 실증 계획(적용장소, 적용시기, 적용제품/솔루션, 실증 환경 제공 기관(소속 부서의 팀까지 제시)) 작성 필수

○ 지원규모: 2개 과제(과제 당 12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2026. 4. 1. ~ 2026. 10. 31. (약 7개월)

○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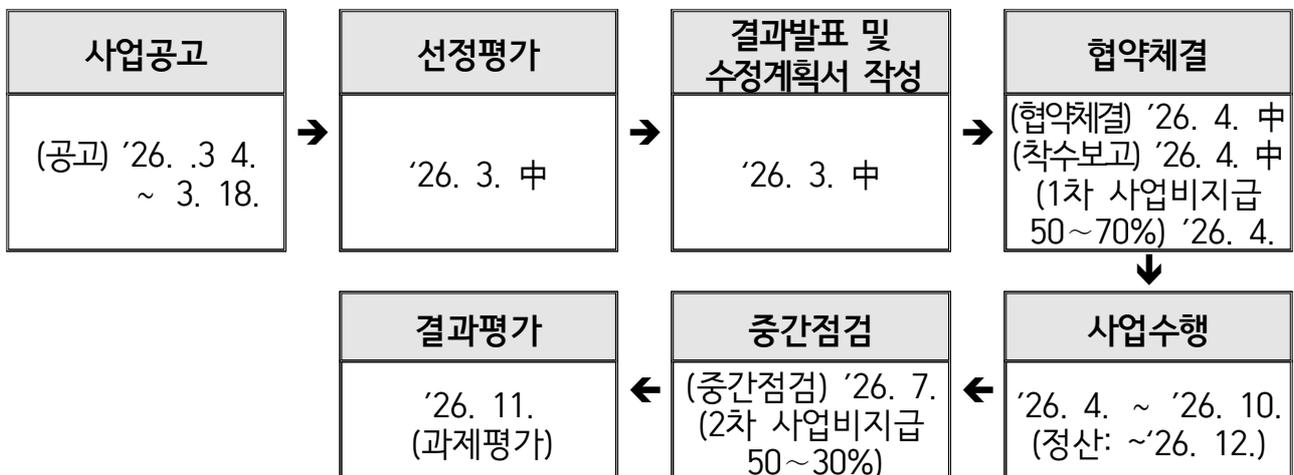
- (실증 지원) 제품서비스 설치, 실증기관 협의를 통한 일부 수정보완, 유지보수, 철거 및 원상복구 용도 등)

- (현장 적용)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현장 적용을 진행하여 사업화로 연계 및 비즈니스 연계

- (특허/인증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록 및 특허/인증지원

- (사업화) 현장적용에 적용될 제품/서비스 제작 비용 등 지원

○ 추진일정



□ 신청 자격 요건

○ 주관기관 신청 자격 요건

- 협약체결 이전까지 **경상남도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정보통신”(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동수행기관 신청 자격 요건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각 시도군 출자 출연기관

□ 연구책임자 자격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상기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수행책임자: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수행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연구자 등

□ 신청 제외 대상

- 경남 디지털 혁신챌린지 사업, 테스트베드 경남 실증 지원사업, 디지털 기업 in경남 사업 지원받은 기업 (2024년, 2025년)
- 도입의사 확약서가 도내 지자체(출자출연기관 포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지 않은 사업자
-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사업공고일 현재)
-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필수)
- 접수일 기준 현재,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

만, “다”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 대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라.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마.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기타사항

○ 정부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자는 공고내용, 신청안내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사업비 편성 기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신규채용 2명 필수 (인건비 산정 가능)

-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단, 제품 관련 재료비 산정금액은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가능)

- 제품 제작 관련 외주용역비 편성 불가

- 회계정산수수료 비용 산정 필수(예상비용은 사업계획서 참조)

- 기업 상용화/사업화 향상을 위한 컨설팅 비용 산정 필수

※ 예시) 기술 및 제품 개발 최적화, 시장 분석 및 고객 검증, 마케팅 및 영업 전략 컨설팅, 고객 유지 및 브랜드 강화, 글로벌 사업화 전략 등

□ 과제선정절차

내 용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공고 및 접수	'26. 3. 4. ~ '26. 3. 18.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청안내 및 제출처 참조	경남TP
자격검토	'26. 3. 19.	○ 신청서류 및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발표평가	'26. 3. 中 (기업별 개별연락)	○ 평가시간: 기업별 15분 발표, 15분 질의 응답 ○ 평가장소: 개별 통보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수행기관 확정	'26. 3. 中 (개별 통보)	○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사업계획서 작성보완	'26. 3. 中	○ 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계획 보완 ○ 과제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계획 검토	수행 기관
협약 체결	'26. 4. 中	○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경남TP ↔ 수행기관

※ 세부일정은 별도로 통보 안내 예정

□ 평가 기준

- 평가일정 및 안내: **개별안내 예정**
- 자격 검토
 - 신청서류 및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 발표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우수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 발표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평가위원 수) + 가점 ※ 소수점 3자리 반올림

□ 가점(우대)사항

- (3점) 경상남도 창원시 내 현장실증 및 적용처인 과제
- (3점) 주관기관 기업 소재지가 디지털 혁신거점(공고문 별첨 참조) 내 기업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6. 3. 4.(수) ~ 2026. 3. 18.(수) 16:00까지 *시간엄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 사업공고] - [지원사업 신청] - [제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 기업연구관 204호 경남테크노파크

- 담당자: 이준우 전임연구원(총괄, 챌린지), 김민지 연구원(테스트베드, 사업화성과확산)

- 전화번호: 055-294-2405, 055-294-2682

- 이메일: joonwoo@gntp.or.kr, kmj0302@gntp.or.kr

□ 제출 서류 (*아래 표의 파일명 확인 후 제출)

제출서류 (파일명)	양식제공	제출대상		비고
		주관	공동	
1. 수행계획서	○	○		(PDF, 한글)
2. 발표자료		○		(PDF, PPT)
3.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		
4.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5.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6.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7. 기업소개 자료		○		
8. 사업자등록증		○	○	
9. 주관 공동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10. 제출공문		○	○	
11. 도입의사 협약서	○	○		

□ NTIS 중복성 검토 방법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사이트 활용
- <http://www.ntis.go.kr> 접속 후 → R&D 과제 준비 메뉴 클릭 → 차별성검토/유사과제 선택 → 유사과제 시작하기(순서대로 진행)
 - ※ 기준차별성: 40(유사도:60), 기준연도: 2002~2025년
 - ※ 기본정보 및 요약정보 내용과 제출된 내용이 상이할 시 과제선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음.

The image displays the NTIS similarity check interface. On the left, the '유사과제' (Similar Tasks) page is shown with a '유사성검토시작하기' (Start Similarity Check) button. On the right, the '1. 대상과제 등록방법 선택' (1. Select Target Task Registration Method) screen is shown, where users can choose between '필입력' (Mandatory) and '선택입력' (Optional) methods. Below this, the '5. 검색결과' (5. Search Results) screen is shown, displaying a table of search results with columns for '등록일자' (Registration Date), '연구과제명' (Research Task Name), '유사도' (Similarity), '기준' (Criteria), '결과' (Result), and '유사성검토결과' (Similarity Check Result). The table shows a result for '2021.12.10' with a similarity of '60%' and a result of 'X'.

- '유사도 60' 수치는 본 과제의 유사도 점수가 아니라 NTIS 측의 내부적인 검증틀에 따른 기준 점수이며, 60% 이상 유사성이 있을 경우 하단의 유사과제 건수가 나옴. 따라서 유사과제 건수에 (X)로 표기되면 중복성 없음으로 판단

□ 민간부담금 기준

- 수행기업 민간부담금 기준: 해당 수행기관 지원금의 20% 이상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비영리기관은 민간부담금 의무사항 없음